

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(김선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 의 자 : 성원환·김명국·이달호·

김선욱·배효임·배철헌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 22.1.13. 시행)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령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라. 공무국외출장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여비규정」

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국외출장 할 때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공무의 수행이 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고령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.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.

제3조(허가권자) 공무국외출장은 고령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허가한다. 다만,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

관(시·군·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)의 계획, 「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제4조에 따른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는 제외한다)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
2. 각종 시찰·견학·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
3.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
4.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

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령군의회의 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하며,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)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.

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

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공무국의 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양교육)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,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출장자의 경력,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(현지활동 등)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, 인원,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·관습·공중도덕 등을 지키며,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,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제7조(보고서 제출 및 등록)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기밀의 보호, 보안유지

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허가권의 위임)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사후관리 등)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,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,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.

제10조(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)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